

순천시의회 공고 제2016-18호

「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8월 22일

순 천 시 의 회 의



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취지

- 시의회 및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과 시민단체 등의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의원의 회의출석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(제7조) 회의출석 - 신설
 - 의원의 회의 불참에 따른 제출서류 규정 및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 금지(제1~2항)

3. 입법예고 기간 : 2016. 8. 22. ~ 2016. 8. 26. (5일간)

4. 의견제출

-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6년 8월 26일까지 순천시의회(순천시의회의회장)에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전화 061-749-4958, 팩스 061-749-4773)
 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여부와 그 사유)
 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 - 다.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붙임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선순례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제2390호
----------	--------

○발의연월일: 2016. 8. 22.

○발 의 자 : 선순례, 신민호 의원

1. 개정 이유

- 시의회 및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과 시민단체 등의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
의원의 회의출석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
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(제7조) 회의출석 - 신설

- 의원의 회의 불참에 따른 제출서류 규정 및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 금지 (제1항, 제2항)

3. 개정조례안 : 별 첨

4. 관련법령

○ 지방자치법 제36조(의원의 의무) 제1항

○ 지방자치법 제38조(지방의회의 의무 등) 제1항

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7조(회의출석)** ① 시의원은 청가서·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.
- ② 시의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구활동 등을 이유로 시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~제6조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조~제6조 (현행과 같음) 제7조(회의출석) ① 시의원은 청가서·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. ② 시의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구활동 등을 이유로 시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된다.

지방자치법

제36조(의원의 의무)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제38조(지방의회의 의무 등)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